

## 【 5 】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3. 11.

제출자 양주시장

### 1. 개정이유

- 국가보훈처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전우회에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감면조례개정 요구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수당지급, 의료지원및 교육·취업보호 등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지방세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고
-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소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차원에서 감면조례개정요구를 수용코자함

### 2. 주요골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규정 신설(안 제2조)

양주시조례 제 호

## 양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시시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양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3
----------	-----

제출년월일 2003. 11.  
제출자 양주시장

## 1. 개정이유

- 국가보훈처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전우회에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감면조례개정 요구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에 대한 표준 안이 시달됨에 따라,
-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수당지급, 의료지원및 교육·취업보호 등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지방세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고
-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소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차원에서 감면조례개정요구를 수용코자함

## 2. 주요골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규정 신설(안 제2조)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생 략) ②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 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 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형제·자매의 명의 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 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 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 급——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 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 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 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 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1. ~ 4.(생 략)	1. ~ 4.(현행과 같음)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궐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 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3장 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제7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의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6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6조(사권체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7조(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 일로부터 7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 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 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5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6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 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건축물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

## 제7장 보 칙

**제27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양주시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지서식]

양주시시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소				
감면내용	세목	연도	기분	당초세액	감면세액
	합계				
감면신청사유	양주시시세감면조례 제 조				
양주시시세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b>양주시장</b> 귀하					
구비서류	감면증빙자료				수수료
					없음